

'95 세입 ·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 토 보 고

1996. 9.

내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목 차

I. 결 산 현 황	165
1. 세입결산 총괄	166
2.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167
3.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172
II. 소관별 세출결산	173
1. 내무국 소관	174
2.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180
3. 소방본부 소관.....	183
4. 공무원교육원 소관	186
5. 도민교육원 소관	189
6. 증평출장소 소관	191
III. 예 비 비 지 출	197

I. 결 산 현 황

1. 세입결산 총괄
2.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3.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I. 결산 현황

1.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1)	징 결 정 액 (2)	수 납 액 (3)	비 율		불 납 결 손 액	미수납액
				1 : 3	2 : 3		
합 계	946,079	998,100	978,547	103.4	98.0	332	19,221
일 반 회 계	666,697	720,362	701,027	105.1	97.3	332	19,003
특 별 회 계	279,382	277,738	277,521	99.3	99.9	-	217
○ 공 기 업	256,882	255,238	255,021	99.3	99.9	-	217
- 공 영 개 발 사업	172,808	167,775	167,558	96.9	99.8	-	217
- 지 역 개 발 사업	84,074	87,463	87,463	104.0	100	-	-
○ 기 타	22,500	22,500	22,500	99.9	100	-	-
- 의 료 보 호	17,265	17,264	17,264	99.9	100	-	-
- 농 어 촌 특 소 대 특별 대	3,324	3,324	3,324	100.0	100	-	-
- 소 득 개 호 대	1,911	1,912	1,912	100.0	100	-	-

□ 검토의견

- '95 세입 총결산액은 전년도 예산현액 7,688억1천만원 대비 1,772억6천9백만원이 증액된 9,460억7천9백만원 규모로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 9,460억7천9백만원에 대하여 105.5%에 해당하는 9,981억원이 징수결정 되었는바 이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536억6천5백만원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6억4천4백만원이 적게 징수결정 된 것임.

따라서 미수납액 192억2천1백만원은 일반회계가 190억3백만원, 특별회계가 2억1천7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에 있어서 3억3천2백만원이 불납 결손액인 것으로 사료됨.

2.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가. 일반회계 세입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1)	징결 수액 (2)	수 납 액 (3)	비 율			불 납 결손액 (4)	미수납액
				1 : 2	1 : 3	2 : 3		
합 계	666,697	720,362	701,027	108.0	105.1	97.3	332	19,003
지 방 세	136,005	194,630	176,253	143.1	129.5	90.5	331	18,046
세 외 수 입	106,771	116,531	115,616	109.1	108.2	99.2	1	914
- 재산 임대수	113	182	174	161.2	154.0	95.5	-	8
- 사용료수입	3,786	3,248	3,208	85.8	84.7	98.7	-	40
- 수수료수입	3,307	3,510	3,510	106.2	106.2	100	-	-
- 사업장생산수	637	731	731	114.6	114.6	100	-	-
- 이자 수입	2,820	5,785	5,785	205.1	205.1	100	-	-
- 순잉용회계	90,709	93,357	93,357	102.9	102.9	100	-	-
- 잉용회계	855	1,068	1,068	124.8	124.8	100	-	-
- 잡수입	4,394	6,581	6,318	149.7	143.7	95.0	-	263
- 과수년도입	150	2,069	1,465	1,379.6	976.9	70.8	1	603
지방교부금	162,096	154,752	154,752	95.4	95.5	100	-	-
지방양여금	46,943	46,943	46,943	100	100	100	-	-
보 조 금	148,820	146,499	146,499	98.4	98.4	100	-	-
지 정 재 원	66,062	61,007	60,964	92.3	92.2	99.9	-	43

□ 검토의견

- '95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전년도 예산현액 5,421억5천1백만원 대비 1,245억4천6백만원이 증액된 6,666억9천7백만원 규모로써
-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 6,666억9천7백만원에 대하여 108.0%에 해당하는 7,203억6천2백만원이 징수결정 되었는데,
 - 예산보다 초과징수 결정된 536억6천5백만원의 내역으로는
 - 지방세 586억2천5백만원으로 이는 부동산과표인상 및 대형건축물 신축등에 기인되며
 - 세외수입에서 97억6천만원은 유휴자금 예치이자등의 증가요인의 발생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 지방교부금 및 보조금과 지정재원에서 예산현액보다 147억2천만원이 잠업검사소 부지매각대 분할납부등의 사유로 감소된 것으로 보여짐.
 - 징수결정된 7,203억6천2백만원중 97.3%에 해당하는 7,010억2천7백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93억3천5백만원중 결손처분된 3억3천2백만원을 제외한 190억3백만원은 금년도로 이월 되었음.

· 지방세	180억4천6백만원
· 세외수입	9억1천4백만원
· 지정재원	4천3백만원
 - 일반회계의 결손처분액 3억3천2백만원의 세원별 내역으로는
 - 지방세가 3억3천1백만원과 세외수입이 1백만원으로

[취득세, 면허세, 소방공동시설세	3백만원
[과년도수입	3억2천9백만원 이며,
 - 불납결손 사유는

[무 재 산	2억5천2백만원 (76.0%)
[거 소 불 명	7천3백만원 (22.0%)
[시 효 완 성	7백만원 (2.0%)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미수납액 190억3백만원은 징수결정액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바 그 사유로는

· 채무자징수유예	2억6천4백만원 (1.4%)
· 채무자거소불명	8억5천7백만원 (4.5%)
· 채무자재력부족	21억1천9백만원 (11.2%)
· 납세자태만	28억8천4백만원 (15.2%)
· 재산압류중	123억2천만원 (64.8%)
· 기 타	5억5천9백만원 (2.9%) 이며

재산압류중·납세자태만·채무자 재력부족 등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 '95세입결산은 예산현액보다 8.0%를 상회하는 징수결정을 하였고, 97.3%의 수납 실적을 올림으로써 세입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였다고 사료됨.

나. 특별회계 세입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1)	징결 정액 (2)	수 납 액 (3)	비 율			불 납 손액 (4)	미수납액 (5) (2-3-4)
				1 : 2	1 : 3	2 : 3		
합 계	279,382	277,738	277,521	99.4	99.3	99.3	-	217
○ 공영개발업 사	172,808	167,775	167,558	97.0	96.9	99.8	-	217
○ 지역개발금	84,074	87,463	87,463	104.0	104.0	100	-	-
○ 의료보호금	17,265	17,264	17,264	99.9	99.9	100	-	-
○ 농 어 촌 소득개발	3,324	3,324	3,324	100	100	100	-	-
○ 대 청 호 특별대책	1,911	1,912	1,912	100	100	100	-	-

□ 검토의견

- '95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예산현액 2,666억5천9백만원 대비 127억2천3백만원이 증가된 2,793억8천2백만원 규모로써
- 공영개발사업등 5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 2,793억8천2백만원에 대하여 99.4%에 해당하는 2,777억3천8백만원이 징수결정 되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33억8천9백만원
 - 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특별회계 1백만원이 초과징수 결정된 반면
 -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33억2천4백만원을 100%로 징수결정 하였고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0억3천3백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백만원이 예산현액에 미달 되었는데
- 이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의료보호 용자금 미회수 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청주 가경2지구 용지 미분양 등으로 감소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그 내역으로는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있어 Δ 50억3천3백만원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 Δ 1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3.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156,362	140,077	12,083	4,202
내무국소관	100,061	94,894	2,687	2,480
민방위재난관리국	384	358	-	26
소방본부	23,118	21,776	1,000	342
공무원교육원	1,458	1,386	-	72
도민교육원	1,391	1,268	-	123
중평출장소	29,950	20,395	8,396	1,159

□ 검토의견

- '95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예산현액 규모는 1,563억6천2백만원으로
- 전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877억4천만원에 비해 686억2천2백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 '95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총예산현액 대비 89.6%인 1,400억7천7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7.7%인 120억8천3백만원 중 109억2천1백만원은 공기부족 및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등의 사유로 익년도로 사고이월 되었고, 11억6천2백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4.0%인 42억2백만원은 예산집행잔액 및 예산집행사유 미발생·계획변경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용처리 되었음.
- 세출결산에 따른 검토의견으로는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려고 하였으나 예산편성 및 집행시 좀더 세밀한 검토와 수요판단으로 불용액의 과다발생 요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II. 소 관 별 세 출 결 산

1. 내 무 국 소 관
2. 민방위 재난 관리국 소관
3. 소 방 본 부 소 관
4. 공 무 원 교 육 원 소 관
5. 도 민 교 육 원 소 관
6. 증 평 출 장 소 소 관

1. 내 무 국 소 관

1. 내 무 국 소 관

가. 세출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100,061	94,894	2,687	2,480
내 무 행 정	7,484	6,683	-	801
시·군구행정운영	3,308	3,033	-	275
지 역 안 정	149	146	-	3
지방 수입 관리	170	140	-	30
회계및재산관리	11,251	7,627	2,687	937
가 정 복 지	3,094	3,053	-	41
문화 예술 진흥	10,932	10,813	-	119
체육 진흥 관리	4,390	4,375	-	15
사 회 교 육	5	2	-	3
지원및기타경비	59,278	59,022	-	256

- 내무국소관의 총예산현액은 1,000억6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총예산현액 447억9천7백백만원에 비해 57.7%인 552억6천4백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 이 중 94.8%인 948억9천4백만원이 지출되었고, 2.7%인 26억8천7백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2.5%인 24억8천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나. 일반회계 세출결산

□ 검토의견

○ 내무행정분야에 있어서

- 내무국소관 일반회계의 총예산현액 1,000억6천1백만원과 대비해 불때 7.5%인 74억8천4백만원 규모로 89.3%인 66억8천3백만원이 지출되었고, 10.7%인 8억1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 불용액 발생 내역으로는

- 계획변경취소 2억4천9백만원
- 예산집행사유미발생 4천6백만원
- 예산집행잔액 5억5백만원 으로

이는 국내·외여비 및 보상금, 연구개발비등의 계획변경취소와 연금지급금 및 일반수용비의 집행사유미발생과 보상금, 연금부담금, 인건비 및 제수당, 급량비,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제세공과금, 출연금등의 예산집행잔액으로서 이견이 없으나 당초예산 편성시 면밀한 판단을 하지 않고 단순한 계획하에 예산계상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시·군구행정운영분야에 있어서

- 총예산현액 대비 3.3%인 33억8백만원 규모로 91.7%인 30억3천3백만원이 지출되었고, 8.3%인 2억7천5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 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

- 계획변경취소 1억4천6백만원
- 예산집행사유미발생 4천4백만원
- 예산집행잔액 8천5백만원 으로

이는 자치단체대형사업비의 계획변경취소와 보상금, 포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 운영수당 등의 집행사유미발생과 일반수용비, 자치단체대형사업비등에 대한 예산집행잔액으로서 금후 예산편성의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지역안정분야에 있어서는

- 총예산현액 대비 0.1%인 1억4천9백만원 규모로 98.0%인 1억4천6백만원이 지출되었고, 2.0%인 3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 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
예산집행잔액이 3백만원으로
이는 일용인부임, 재료비, 자산취득비등의 집행잔액으로서 이견이 없으며, 대체적으로 적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됨.

○ 지방수입관리분야에 있어서는

- 총예산현액 대비 0.2%인 1억7천만원 규모로 82.4%인 1억4천만원이 지출되었고, 17.6%인 3천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
 - 예산집행잔액 3천만원 으로

이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특수활동비등의 집행잔액으로서 이견은 없음.

○ 회계및재산관리분야에 있어서는

- 총예산현액 대비 11.2%인 112억5천1백만원 규모로 67.8%인 76억2천7백만원이 지출되었고 23.9%인 26억8천7백만원은 공무원교육원 신축공사비로서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익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8.3%인 9억3천7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
 - 계획변경취소 1억9천5백만원
 - 예산집행사유미발생 2백만원
 - 예산절감 1백만원
 - 예산집행잔액 7억3천9백만원 으로

이는 운영수당, 자산취득비, 토지매입비의 계획변경취소로 결산검사위원수당 6백만원 자동차대체취득 1천7백만원, 대체재산조성 1억7천2백만원이며, 집행사유미발생으로는 공공요금및제세, 일반수용비로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료와 고장견인차 견인료 및 세차장오수검정 및 약품구입이며

예산절감으로는 일용인부임으로 회계증빙서정리 인부임을 절감한 것으로 이견이 없음. 예산집행잔액으로는 시설장비유지비, 비정규직보수,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감리비등으로 이견이 없으나, 공무원교육원 신축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가 97.6%인 7억2천1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예산편성시 적정 예산책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요액 판단에 세심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가정복지분야에 있어서는

- 총예산현액 대비 3.1%인 30억9천4백만원 규모로 98.7%인 30억5천3백만원이 지출되었고, 1.3%인 4천1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불용처리발생 내역으로는

- 예산집행잔액	2천3백만원
- 보조금집행잔액	1천8백만원 으로

이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보상금, 민간경상보조등의 예산집행잔액 및 보조금잔액으로 이견이 없음.

○ 문화예술진흥분야에 있어서는

- 총예산현액 대비 10.9%인 109억3천2백만원 규모로 98.9% 108억1천3백만원이 지출되었고, 1.1%인 1억1천9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 바
- 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

- 계획변경취소	1억2백만원
- 예산집행사유미발생	1천만원
- 예산집행잔액	7백만원 으로

이는 예술문화 및 문화재관리 예산집행잔액과 운영수당, 보상금의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에 기인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인 영동난계국악단원 및 청주시립교향악단 상임화 지원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인 영동난계국악단원 및 청주시립교향악단상임화 지원비의 계획변경취소로 발생한 불용액으로서 이견이 없으나, 사업계획수립시 적정한 예산계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체육진흥관리분야에 있어서는

· 총예산현액 대비 4.4%인 43억9천만원 규모로 99.7%인 43억7천5백만원이 지출되었고, 0.03%인 1천5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

- 예산집행사유미발생 1천2백만원
- 예산집행잔액이 3백만원 으로

이는 직장체육팀운영에 있어 펜싱운영 보상에 대한 예산집행사유 미발생과 일반수용비등의 예산집행잔액으로 이견이 없음.

○ 사회교육분야에 있어서는

· 총예산현액 대비 0.005%인 5백만원 규모로서 40.0%인 2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60.0%인 3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바

이는 일반수용비와 일반사회교육비의 사회교육 강사수당 및 여비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이견이 없음.

○ 지원및기타경비분야에 있어서는

· 총예산현액 대비 59.2%인 592억7천8백만원 규모로 99.6%인 590억2천2백만원이 지출되었고, 0.4%인 2억5천6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이는 지방채상환의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및 수해복구사업 이자상환과 제지출금의 국고반환금반납, 기타 징수교부금의 예산집행잔액으로서 이견이 없음.

2.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2.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가. 세출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384	358	-	26
민방위 관리	259	245	-	14
비상 대책	125	113	-	12

-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의 총예산현액 3억8천4백만원중 93.2%인 3억5천8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없으며 6.8%인 2천6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나. 일반회계 세출결산

□ 검토의견

-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총예산현액 3억8천4백만원중 6.8%인 2천6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는 전액 예산집행잔액으로서
- 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
 - 민방위관리분야에 있어
총예산현액 3억8천4백만원 대비 67.4%인 2억5천9백만원중 5.4%인 1천4백만원과
 - 비상대책비에 있어
총예산현액 대비 32.6%인 1억2천5백만원중 9.6%인 1천2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이를 세분하여 분석보면

· 민방위관리비 불용액 1천4백만원중

- 일반 민방위관리 4백만원
- 민방위 시설장비 3백만원
- 민방위 교육훈련 7백만원 으로

이는 전액 예산집행잔액인 바, 민방위운영관리의 일반운영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예산 집행잔액과 민방위시설장비의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및 민방위교육훈련의 일반운영비, 보상금 예산집행잔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이며

· 비상대책분야에 있어서는 불용액 1천2백만원중

- 비상대비 및 예비군관리 1천2백만원 으로

이는 비상대비 일반운영비, 실시설계비, 시설비등의 예산집행잔액과 예비군관리 및 일반 운영비의 예산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액으로 이견이 없음.

3. 소방본부소관

3. 소방본부소관

가. 세출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23,118	21,776	1,000	342
소방 행정 관리	21,657	20,329	1,000	328
소방 방호 관리	990	976	-	14
청주소방서운영	121	121	-	-
충주소방서운영	34	34	-	-
제천소방서운영	253	253	-	-
영동소방서운영	21	21	-	-
증평소방서운영	42	42	-	-

- 소방본부소관의 총예산현액 231억1천8백만원중 94.2%인 217억7천6백만원이 지출되었고 4.3%인 10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1.5%인 3억4천2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나. 일반회계 세출결산

□ 검토의견

- 소방본부소관 총예산현액 231억1천8백만원중 4.3%인 10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1.5%인 3억4천2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바, 이는 전액이 예산집행잔액으로서
- 이를 세분하여 분석해보면
 - 소방행정관리분야에 있어서는 총예산현액 대비 93.4%인 216억5천7백만원중 49.2%인 10억원은 충주호소방구조정신조 시설비등이 명시이월된 것이며, 1.5%인 3억2천8백만원은 인건비 및 제수당과 공공요금및제세, 시설비, 자산취득비등의 예산집행잔액으로 보다 면밀한 수요판단에 따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소방방호관리분야에 있어서는

총예산현액 대비 4.3%인 9억9천만원중 1.4%인 1천4백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 바, 이는 화재예방홍보 및 의용소방대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항목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보상금등의 집행잔액으로서 이견이 없음.

- 청주·충주·제천·영동·증평소방서운영분야에 있어서는

총예산현액 대비 2.0%인 4억7천1백만원중 이월액 및 불용액이 없이 전액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었다고 사료됨.

4. 공무원교육원소관

4. 공무원교육원 소관

가. 세출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1,458	1,386	-	72
서무관리	1,238	1,191	-	47
교학관리	220	195	-	25

-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총예산현액 14억5천8백만원 규모중 95.1%인 13억8천6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없으며 4.9%인 7천2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나. 일반회계 세출결산

□ 검토의견

- 공무원교육원 소관 총예산현액 대비 4.9%인 7천2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바, 이는 예산집행잔액 7천만원, 지급사유미발생 2백만원으로서 거의 대부분 인건비, 일반운영비, 보상금, 자산취득비등의 집행잔액으로 이견이 없음.
- 이를 세분하여 분석해보면

· 서무관리분야에 있어

총예산현액 14억5천8백만원 대비 84.9%인 12억3천8백만원 규모로 96.2%인 11억9천1백만원이 지출되었고, 3.8%인 4천7백만원이 불용처리 된 것으로

· 불용처리 내역으로는

- 인건비 및 수당 2천만원
- 일반운영비 2천4백만원
- 업무추진비 2백만원
- 자산취득비 1백만원 으로

이는 예산집행잔액이 4천5백만원, 지급사유미발생 2백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소요인건비 및 기본적경상경비의 소요판단에 보다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교학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총예산현액 대비 15.1%인 2억2천만원 규모로 88.6%인 1억9천5백만원이 지출되었고, 11.4%인 2천5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불용처리 내역으로는

-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3백만원
- 예산집행잔액 2천2백만원 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자산취득비등의 예산집행잔액으로 이견이 없음.

5. 도 민 교 육 원 소 관

5. 도 민 교 육 원 소 관

가. 세출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1,391	1,268	-	123
사업소 운영	1,391	1,268	-	123

- 도민교육원 소관의 총예산현액 13억9천1백만원 규모중 91.2%인 12억6천8백만원이 지출되었고 8.8%인 1억2천3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나. 일반회계 세출결산

□ 검토의견

- 도민교육원소관 총예산현액 대비 8.8%인 1억2천3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바

- 이를 세분하여 분석해보면

. 사업소운영에 있어서

인건비의 기본급 및 수당등 1천6백만원, 관서운영의 일반영비 4천4백만원, 보상금 2천7백만원, 시설비 2천2백만원, 예산절감등 1천4백만원으로 적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차후 세심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증 평 출 장 소 소 관

6.증 평 출 장 소 소 관

가. 세 출 총 관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29,950	20,395	8,396	1,159
일 반 행 정 비	7,994	7,299	98	597
사 회 복 지 비	2,095	1,807	151	137
산 업 경 제 비	1,816	1,371	143	302
지 역 개 발 비	17,560	9,571	7,884	105
문 화 및 체 육 비	344	220	120	4
민 방 위 비	24	16	-	8
지 원 및 기 타 경 비	117	111	-	6

○ 증평출장소 소관의 총예산현액은 299억5천만원으로

○ 이중 68.1%인 203억9천5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 83억9천6백만원중 0.5%인 1억6천2백만원이 명시이월, 27.5%인 82억3천4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3.9%인 1억5천9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나. 일반회계 세출결산

□ 검토의견

- 중평출장소 소관 총예산현액중 68.1%인 203억9천5백만원이 지출되었고 28%인 83억9천6백만원이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으며, 11억5천9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 바,
- 불용액에 대해 원인별로 세분하여 분석해보면
예산집행잔액이 11억2천6백만원, 계획변경취소가 6백만원 지급사유미발생이 2백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2천5백만원으로서
- 이를 분야별로 세분하여 분석해보면
- 일반행정비분야에 있어서
· 총예산현액 299억5천만원 대비 26.7%인 79억9천4백만원 규모로 예산현액의 91.3%인 72억9천9백만원이 지출되었고 1.2%인 9천8백만원이 남하4리 노인정 신축공사, 남하4리 노인정전기공사, 송정소류지 소로보수공사, 노암1리 진입로 확장공사 및 편입용지보상금, 보강천체육공원본부석 증축 및 전기공사를 함에 있어 동절기로 인한 공사연기에 기인한 사고이월액이며, 7.5%인 5억9천7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
- 예산집행잔액 5억9천7백만원
· 이는 복리후생비, 수당, 비정규직보수, 시설비등이 과다책정된 바, 차후 예산편성시 적정을 기하여야 될것으로 사료됨.
- 사회복지비분야에 있어서는
· 총예산현액 대비 7.0%인 20억9천5백만원 규모로 예산현액의 86.3%인 18억7백만원이 지출되었고, 7.2%인 1억5천1백만원은 소각로기계 및 건축·전기공사를 함에 있어 동절기로 인한 공사연기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6.5%인 1억3천7백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 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

- 예산집행잔액 1억2천8백만원
- 보조금집행잔액 9백만원 으로

이는 보상금, 구호비, 민간경상보조등의 보조금집행잔액으로서 이견이 없으나, 공공요금 및제세, 기타운영비, 민간자본보조, 보상금, 일용인부임, 토지매입비등의 예산집행잔액으로 예산계상시 수요판단에 적정을 기하여 예산책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산업경제비분야에 있어서는

- 총예산현액 대비 6.1%인 18억1천6백만원 규모로 예산현액의 75.5%인 13억7천1백만원이 지출되었고, 7.9%인 1억4천3백만원이 화성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및 전기공사, 화성리~송정간 도로확장공사가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16.6%인 3억2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예산집행사유미발생 2백만원
- 예산집행잔액 2억9천9백만원
- 보조금집행잔액 1백만원 으로

이는 보조금 집행잔액 1백만원과 일반수용비, 재료비, 공공요금및제세가 예산집행사유미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이견이 없으며, 다만 식량증산 및 축산행정 민간자본보조비등이 예산집행잔액으로서 차후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로 과다 불용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책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지역개발비분야에 있어서는

- 총예산현액 대비 58.6%인 175억6천만원 규모로 예산현액의 54.5%인 95억7천1백만원이 지출되었고, 44.9%인 78억8천4백만원중 광역상수도 토지매입비 7천만원이 명사이월, 중평공업단지 실시설계비 승인후 지급액 1억7천3백만원, 가로축조공사 및 소하천정비 토지보상금 미수령액 9천6백만원, 공사시기 미도래로 인한 광역상수도 실시설계비 1억1천3백만원, 광역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시설비 2억5천4백만원, 군도정비사업 실시설계비 및 부대비 6억8천8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12억9천4백

만원이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0.6%인 1억5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

- 예산집행잔액 9천만원
- 보조금집행잔액 1천5백만원으로

이는 재해복구 민간시설보조등의 보조금집행잔액과 상·하수도사업 시설비, 치수 및 하수사업비등의 예산집행잔액으로 이견이 없으나, 충분한 사업내역 검토로 과다 책정 하는 사례가 없이 예산책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문화 및 체육비분야에 있어서는

- 총예산현액 대비 1.1%인 3억4천4백만원 규모로 예산현액의 64%인 2억2천만원이 지출되었고, 3.5%인 연병호선생 영단건립 건축설계비가 9천2백만원이 명시이월, 보강천 체육시설공사비가 2천8백만원이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1.2%인 4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

- 예산집행잔액 4백만원 으로

이는 일반수용비, 연료비, 시설비등의 집행잔액으로서 이견이 없음.

○ 민방위비분야에 있어서는

- 총예산현액 대비 0.08%인 2천4백만원 규모로 예산현액의 66.7%인 1천6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없으며 33.3%인 8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

- 계획변경취소 6백만원
- 예산집행잔액 2백만원 으로

이는 민방위시설장비 공공요금 및 제세등의 예산집행잔액과 민방위시설장비 재료비의 계획변경취소로서 이견이 없음.

○ 지원및기타경비분야에 있어서는

· 총예산현액 대비 0.4%인 1억1천7백만원 규모로 예산현액의 94.9%인 1억1천1백만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없으며 5.1%인 6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불용액발생 내역으로는

- 예산집행잔액 6백만원 으로서

이는 중평출장소 상수도 차입금 예산집행잔액으로서 이견이 없음.

III. 예 비 비 지 출

III. 예 비 비 지 출

(단위 : 원)

구분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 출 액	불 용 액	예비비 지출사유
계	6건	658,231,000	630,763,750	27,467,250	
내무	유족보상금	54,792,000	54,792,000	0	도민교육원에 재직중 순직한 고 김용구의 유족보상금 (승인 '95. 7. 28, 지출 '95. 7. 28)
	도지사 이·취임식 경비	19,500,000	15,280,000	4,220,000	도지사 이·취임식행사에 따른 소요경비 (승인 '95. 6. 26, 지출 '95. 7. 4)
	월드컵유치사업	406,000,000	406,000,000	0	2002년월드컵축구대회경기장 기본설계를 '95. 6월말까지 유치위에 제출토록 되어있으나 예산미확보로 착수치 못하고있어 기한내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예비비에서 집행 (승인 '95. 3. 16, 지출 '95. 3. 21)
도민교육원	수해 복구비	151,757,000	130,135,950	21,621,050	'95. 8. 25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교육원 시설물 수해복구비 (승인 '95. 9. 2, 지출 '96. 1. 4)
중증장애인	가뭄대책비(영농분야사업)	6,182,000	4,558,800	1,623,200	가뭄극복을 위한 예비못자리 설치 논물가두기 자재등 영농사업비 (승인 '95. 3. 22, 지출 '95. 4. 27)
	수해 복구비	20,000,000	19,997,000	3,000	'95. 8. 25중평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응급복구비 (승인 '95. 8. 26, 지출 '95. 9. 4)

- 공무원연금법 제61조 2항, 동법 제65조 2항에 의한 유족 보상비로 54,792,000원의 지출결정액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없으며,

-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이·취임식 경비외 4건의 지출요인에 의해 603,349,000원이 지출결정 되고, 575,971,750원이 지출되었으며, 27,467,250원이 불용처리 되었던 바,
- 불용사유로는 도지사 이·취임식 경비중 전야제 불꽃행사 취소에 따른 재료비잔액과 도민교육원 수해복구 시설비의 입찰차액, 중평출장소 가뭄대책비중 가뭄 해소로 예비 못자리를 설치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이견이 없음.

〈공무원연금법〉

제61조(유족보상금) ①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 사망하거나 퇴직후 3년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① 제1항의 유족보상금의 금액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보수월액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5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생략

②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중 공무상의 질병·부상·폐질 또는 사망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지방재정법〉

제34조(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94.12.22)

〈농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재해의 예방·재해의 경감·재해의 복구 및 지원의 조치를 받은 농가 및 어가는 이 법에 의한 보조 및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